하나UBS자산운용
150-7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-3번지
Tel: 02-3771-7800 www.ubs-hana.com

하나UBS자산운용

2021.04.01

상 품 : 제2021 -41호
수 신 : 수신처 참조
참 조 : 상품기획 관련 담당 부서장
제 목 : 소규모펀드 공시 안내

귀사(행)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당사에서 운용하는 소규모펀드의 수시공시대상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
-- 아 래 --

1. 관련근거 :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(수시공시의 방법 등) 제3항
2. 적용 대상 :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추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설정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이거나,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
3. 대상펀드명 : 하나UBS장기주택마련증권투자신탁(제1호)[채권혼합] (첨부파일 참조)
4. 처리 방법 : 수시공시
5. 발생일자 : 2021년 2월 27일
6. 공 시 일 : 2021년 4월 1일
7. 기 타 : 해당 펀드중 투자신탁은 소규모펀드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(투자신탁의 해지) 제1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할 수 있음
8. 소규모비율 산정대상 제외 : 소규모펀드 정리활성화 및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제4조3항3호
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령에 따라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펀드 중 법령상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규가입이 종료된 펀드로서 자산운용사가 운용 중인 다른 펀드 중 투자대상자산, 투자전략 등이 유사한 펀드가 없어 모펀드 이전 등이 불가능한 펀드

첨 부 : 소규모펀드 수시공시 대상 목록 1부.

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㈜
대표이사 이 원 종

수신처 : 하나금융투자